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226
------	------

2025. 12. 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0월 20일, 김경 의원 외 9명

나.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8.)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경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서울역사 연구 활성화 및 시사편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시행 중이며, 이 중 제4조 제3항은 민간위원을 “서울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간 위원 위촉을 위해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던바(2023. 12. 18. 의결) 해당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간위원은 ‘대학에서 역사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사편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자 빌의되었음

나. 민간위원 자격요건 구체화의 필요성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2월 「행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의결 제2023-988호) 의결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17개 광역자치 단체 등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간위원 위촉을 위한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서울특별시는 2024년 12월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정비를 통해, 교육인(교수/학계)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¹⁾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등으로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였음.

- 그러나 시사편찬위원회는 서울역사 연구의 활성화와 시사 편찬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 제4조제3항은 민간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여전히 "서울 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불명확한 기준은 위원 선정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어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바,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에 전공 요건과 경력 요건을 추가하여, 현행의 추상적 기준을 객관적·정량적 기준으로 전환하고자 함.

1)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 ② (생 략) ③ 위원은 서울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학에서 역사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 ----- -----.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 동 개정조례안은 자문위원회인 시사편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여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함.

또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법률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은 서울역사 연구 및 시사 편찬을 심의하는 위원 위촉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검증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위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및 심의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7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226
----------	------

발의년월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김경, 김기덕, 김원태,
김인제, 박승진, 성흠제,
유정희, 임만균, 최재란,
한신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서울역사 연구 활성화 및 시사편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시행 중이며, 이 중 제4조제3항은 민간위원을 “서울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간 위원 위촉을 위해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던바(2023. 12. 18. 의결) 해당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간위원은 ‘대학에서 역사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서울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학에서 역사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구성 및 임기) ① · ② (생략)</p> <p>③ 위원은 <u>서울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u>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제4조(구성 및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대학에서 역사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u></p> <p>-----</p> <p>-----</p> <p>-----</p> <p>-----.</p>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는 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에 대해 구체화¹⁾한 것으로 통상 자격요건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재정지출은 없으므로 해당 규정에 의한 추가 재정 소요 발생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현

추계분석관 손재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

1) [위원회 운영비 미영향 요소] 해당규정은 위원회 운영비용의 주요 변화요소인 위원 총정원(Q)은 유지한 채 구성원 자격에 대해서 구체화한 것이므로 총비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